



정보이동권의 국내 도입 방안

- EU GDPR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박 현 일*

| 국문 요약 |

EU에서는 정보이동권이 GDPR에 포함되어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권이란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제가, 또 2015년에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GDPR에 따르면 정보이동권이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초 GDPR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정보이동권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많았다. 그러나 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비용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보이동권은 IT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GDPR의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 실무작업반에서는 정보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정보유통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외국의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데이터 시장 탈환의 무기로 정보이동권을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보이동권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거대 IT기업의 정보유통 시장 지배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정보이용 서비스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이동권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일차 SNS를 통해 유·불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클라우드형 전자우편이나 금융거래정보가 이전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를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IoT를 도입한 커넥티드 카나 네트 가전으로 확장될 것이다. 나아가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의 이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정보이동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업계의 준비상황을 보아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투고일자 : 2017.08.21., 심사일자 : 2017.08.30., 게재확정일자 : 2017.09.15.)

주제어 : 정보이동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유통, 클라우드형 전자우편, 플랫폼,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차 례 〉

- I. 머리말
- II. GDPR의 정보이동권
- III. 정보이동권의 도입 검토
- IV. 우리나라에의 도입 방안

I. 머리말¹⁾

정보이동(data portability)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2004년부터 가입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통신 사업자 및 서비스 내용을 변경(switching)할 수 있게 하는 번호이동성제(mobile number portability)가 시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자동이체(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포함) 항목을 새 은행계좌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²⁾

정보이동 또는 정보이전이란 어느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EU 집행위원회가 2012년 1월 GDPR³⁾을 처음 제안하였을 때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처음 도입되었다.

1) 이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제개선연구반에서 필자가 2017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논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며 여기 포함된 입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임을 밝힌다. 아울러 연구반 회의 때 코멘트 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논문심사에서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좌이동 서비스제를 도입하였다. 그 취지는 고객의 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홍정아, “우리나라 계좌이동 서비스 현황 및 영국 사례의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3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3.15.

그것은 어느 정보처리자(controller)가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그에 관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이동권에 관한 GDPR안은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유럽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유럽의회가 2016년 4월 최종 확정된 법안⁴⁾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2012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이동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⁵⁾ 이에 따라 APEC 내의 전자상거래 운영위원회(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ECSG)의 개인정보 소위원회(Data Protection Subgroup: DPS)에서는 뉴질랜드의 제안에 따라 차세대 프라이버시 이슈의 하나로 정보이동권에 관한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고는 우선 GDPR 해당 규정의 내용과 제정경위 등을 알아보고 위와 같이 정보이동권을 인정하는 국내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도 이를 도입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만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또한 어떠한 준비와 고려가 필요하며, 필요한 법 규정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과는 달리 역내 회원국에 직접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 GDPR은 4년에 걸쳐 유럽의회, 각 회원국과의 협의(Trilogue)를 거친 끝에 2015년 12월 극적인 타결을 보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5) Blair Stewart, “Transplanting a privacy right to data portability into law”,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140, Apr. 2016, p.7.

II. GDPR의 정보이동권

1. GDPR 규정

EU GDPR⁶⁾은 제20조에서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RDP)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Recital) 제68항에서는 그 해석의 기준이 될 만한 사항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정보처리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처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제20조 정보이동권⁷⁾

(1)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에 구조화되어 있고 통상 사용하는 것으로 기계로 읽을 수 있는 양식에 따라 그 또는 그녀가 정보처리자(controller)⁸⁾에게 제공한 그 또는 그녀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처음 정보를 제공한 정보처리자의 방해 없이 이를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a) 개인정보를 제6조(적법한 정보처리) 제1항 a호 또는 제9조(민감한 정보처리) 제2항 a호에 따른 동의를 받고 처리하거나, 제6조 제1항 b호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b)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6) EU는 GDPR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사이트<<http://www.eugdpr.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텍스트는 EU 집행위원회의 사법총국(DG JUST)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reform/files/regulation_oj_en.pdf>

7) 2012 EU 집행위원회 GDPR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초안의 제18조가 제20조로 바뀌었고, 2) “그 또는 그녀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표현을 명기하였다. 3) “기술적으로 가능한(technically feasible) 경우의 직접 이전”을 추가하고, 4) 양식, 기술표준을 집행위원회가 특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5) 타인의 권리와 조정해야 함을 명기하였다.

8) GDPR에서는 controller(관리자)로 규정하여 processor(처리자)와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위탁 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정보처리자로 번역하였다.

- (2)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그의 정보이동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개인정보가 정보처리자로부터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되도록 하는 권리를 갖는다.
- (3)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17조(정보삭제권)에 관계없이 행사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하는 정보처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2. EU 정보이동권의 요건 및 효과

EU GDPR은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었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돌려받거나 제3의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정보열람권이나 정정권과 나란히 주장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한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정보처리가 자동화된 수단(automated means), 즉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둘째, 정보주체가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동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했어야 하고 또 이동 가능하여야 한다. 주로 정보주체가 직접 SNS에 올린 정보가 주된 대상이며, 정보처리자가 기존 정보를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⁹⁾는 이동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정보처리의 양식(format)¹⁰⁾은 구조화(structured)되어 있고 통상 사용(commonly

9) 예컨대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체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동대상이다. 그에 한하지 않고 정보처리자가 달리 확보한 건강이력정보와 결합하여 그에 관한 전혀 새로운 건강정보를 획득하였다면 이것은 이동대상이 아니다. Robert Madge, "GDPR: data portability is a false promise", Medium.com, July 4, 2017.

<<https://medium.com/mydata/gdpr-data-portability-is-a-false-promise-af460d35a629>>

10) EU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로 구성된 제29조 실무작업반에서는 XLM, JSON,

used)하는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le)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문서나 그림은 모두 정보이동의 대상이 된다.

넷째,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정보처리나 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보처리인 경우에는 정보이동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테면 정보처리자가 그에게 부과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이동권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이동권이 인정되는 결과 EU 시민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차적으로 열람(access)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정보처리자의 사일로(silo)에 가둬놓지 말고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feasible),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이전 비용에 대해 묻지 아니하나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이전의 결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유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정보이동권은 GDPR에 새로 규정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대상으로서 정보삭제권(erasure of personal data)과는 무관하다.

요컨대 정보이동권은 이번에 GDPR에 규정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이른바 개인정보의 ARCO권(개인정보를 열람·정정·취소·이의할 수 있는 권리)과 나란히 인정받게 되었다.

3. GDPR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2012년 초 GDPR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정보이동권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GDPR의 전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주체의 정보이동권은

CSV를 표준 포맷으로 추천하였다. Article 29 Working Party, "Revised WP242 Guidance", 5 April 2017.

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비용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IT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¹¹⁾

가. 긍정론

빅데이터의 시대에 EU 시민의 60% 이상이 스스로의 정보 컨트롤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¹²⁾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정보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갇히는 것(lock-in)을 피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와 함께 경쟁개선·경쟁촉진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¹³⁾

EU는 개인정보감독 차원에서 동의 및 계약 베이스로 수집한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이동권을 널리 행사한다면 곳곳에 서로 연결된 체인점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업소나 서비스(distributed network of personal data stores and services)가 늘어나고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PIMS)도 보다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그동안 정보주체가 IT업체에 넘겨줬던 정보처리에 관한 권한을 되찾아 새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독일연방 개인정보보호기구(BfDI)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양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그러한 양식으로 관리자가 정보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만 정보이동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정보처리 일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1) 生貝直人(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客員准教授), “EUの状況：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の権利を中心に”, 2016. 11. 11, 7面.

12) 2009년에 계좌이동 서비스(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를 시작한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은행 간에 서로 다른 업무처리절차, 계좌이동 후 처리기준의 차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후 2013년 9월부터 업무 표준화, 이체요류에 대한 보충,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홍정아, 앞의 보고서, 2쪽.

13)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비비안 레드딩(Viviane Reding) 위원이 2012년 1월 25일 GDPR안 제안사유를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14) Robert Madge, *op.cit.*

나. 부정론

정보이동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행사된다면 기존 정보처리자들은 이동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이동권을 능가하는 적법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위한다는 명분을 세우려 할 것이다.¹⁵⁾ 이처럼 정보이동권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도 있고,¹⁶⁾ ebay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다른 이용자의 사용후기, 코멘트, paypal 거래이력 등 제3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기업으로서 커다란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경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프라이버시법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피터 스와이어(*Peter Swire*) 교수는 광범한 정보이동권의 도입은 경쟁정책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소비자이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¹⁷⁾

다. GDPR에 있어서 정보이동권의 구체화 관련 논점

정보이동권의 행사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보호 대상은 개인정보이지만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된다. EU 집행위원회와 의회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보이동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주로 미국계인 IT 자이언트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정보처리자끼리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정보이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 개인이 관리자에게 제공한 정보란 무슨 정보를 말하는지도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된 센서 데이터는

15) *Ibid.* 로버트 매지는 정보이동권을 인정하면서도 이겨서 빠져나오려는 현상을 가리켜 “둘로 나뉜 인격”(split personality)이라고 표현했다.

16) 정보이동권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이동대상 외 정보는 민감정보와 계약상으로 제외시킬 것이 뻔한 고용관련 정보, 이동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정보들이다. PwC, “GDPR data portability requirement to hit US CIO budgets”, GDPR Series.
<<http://www.pwc.com/us/en/increasing-it-effectiveness/publications/assets/gdpr-data-portability.pdf>>

17) 佐佐木勉, “欧州における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の在り方を巡る議論の動向”, 總務省AIネットワーキング化検討會議 提出資料, 2016.4.

어디까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시행 과정에서 EU의 IT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양식이란 어떠한 양식을 가리키는가? 이와 관련하여 GDPR 제40조의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이동권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정보이동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이동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정보는 정보이동의 대상 외로 하였거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비용이 거의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EU의 정보이동권 가이드라인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관들로 구성된 EU지침 제29조의 실무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 29WP)에서는 GDPR의 시행을 앞두고 정보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을 2016년 12월 채택한 데 이어 2017년 4월 5일 1차 개정안을 공표하였다.¹⁸⁾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역내 개인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안전성·경제성을 놓고 정보처리자 간의 경쟁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예: switching of service providers)가 속속 등장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29조 실무작업반에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정보이전 요청에 응하기 위한 다운로드 툴, 스마트폰 앱 인터페이스 같은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도록 권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전자적 처리, 통상의 사용양식, 컴퓨터 처리 가능, 상호 운용가능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처리자로서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모범관행이나 일 처리방식(tools)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p242_rev01_enpdf.pdf는 아래 사이트 참조.

<http://ec.europa.eu/newsroom/just/item-detail.cfm?item_id=50083>

Ⅲ. 정보이동권의 도입 검토

1. 정보유통의 플랫폼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한 정보이동권

EU에서 정보이동권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ARCO권리와는 배경이 다르다. 개인정보의 열람권·정정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정보이동권은 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요하는 데다 정보처리자의 시장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t position*)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런데 유럽의 정보유통 생태계에 있어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플랫폼²⁰⁾을 장악하고 정보유통 시장을 과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2017년 초까지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한 독일의 정치인 슐츠(*Martin Schulz*)는 거대 IT기업(*Digital Giants*)에 의한 데이터 시장의 지배는 경제문제에 한하지 않고 사회질서의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²¹⁾

만일 정보이동이 안 된다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특정 정보처리자의 서버에 갇혀(*lock-in*) 있거나 다양한 사업자와 정부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호환성도 없는 데다 DB관리자의 동의를 얻으면

19) Inge Graef, Jeroen Verschakelen & Peggy Valcke, “Putt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to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January 2013.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1092445>>

20) 이러한 플랫폼은 중세 시대에는 봉건영주와 교회, 길드조합 등 중간조직에 속하였고 개인의 인권은 도외시되기 일쑤였다. 기본적 인권이 강조되는 21세기의 정보사회에서도 플랫폼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이러저러한 플랫폼에서 조각난 인격을 스스로의 의사로 재통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정보이동권이 앞으로 정보사회의 불가결한 인권으로 인식될 것이다. 生貝直人, “自律·分散·協調社会と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の権利”, 經濟産業省分散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6回, 2016.7.27, 24面.

21) EU의회의 슐츠 전 의장은 2016년 1월 유럽의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개인정보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되고 있다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인과 사법부의 임무이다. 이러한 상품에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 드는 상황에서 디지털 사이언스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합할 수 있을지라도 일일이 동의를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취득 시에 이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개청구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전혀 알 수가 없다.²²⁾

인터넷 환경에서 중요 정보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²³⁾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 기업에 정보가 집중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로봇 등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을 장악한 거대 IT기업에 정보가 집중되는 상황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이용되는 제조업, 의료 및 교통 서비스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주로 미국계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데이터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무기로 정보이동권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2. 정보이동권 도입에 따른 이점

우리나라에도 EU에서와 같은 정보이동권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거대 IT기업(GFAA)의 정보유통 시장 지배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정보이용 서비스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과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외국의 IT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며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무방비로 보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각종 규제의 탈피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업종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OECD나 WTO의 룰에 의하면 국내 시장에서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핀테크(FinTech)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이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거나 이용후기 등을 비교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적의

22) 일본의 경우 익명가공정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익명가공된 정보이지 다양한 정보 간에 인명록에 의한 딥 데이터의 작성이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生具直人, 앞의 보고서, 3면.

23) 세계 정보유통시장의 플랫폼을 지배하는 이들 IT기업의 머리글자를 따서 'GFAA'라고 부른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찾아 다른 SNS 이용자와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이동권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대일차적으로는 SNS를 통해 유·불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클라우드형 전자우편(cloud email)이나 금융거래정보가 이전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를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도입한 커넥티드 카나 네트 가전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나아가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의 이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이러한 논의가 활발한 일본²⁴⁾과 영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보이동권의 적용사례를 알아본다.

① 클라우드형 전자우편

EU에서 정보주체의 정보이동권은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클라우드 컴퓨팅을 스위칭(switching)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과산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²⁵⁾ Gmail, MSN메일 등 클라우드형 전자우편의 이용자는 종전의 전자우편에 대하여 다른 클라우드 메일 등으로 정보이전을 할 수 있음을 보장 받고 있다.

클라우드 메일서버 간에 직접 이전하는 것 외에 표준양식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금융거래 정보

본래 금융상품·서비스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고 시장조작, 이해상충 기타 불공정행위 등을 용납하지 않았다. 2012년 영국의 금융감독기구(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가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와 영업행위규제로 이원화됨에 따라 금융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금융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다.²⁶⁾ 그리하여 FCA와 대형

24) 生貝直人, 앞의 보고서, 12~16면.

25) 佐佐木勉, 앞의 보고서, 53~54면.

2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영국은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을 제정하고 종전의 사실기반 감독체계(Box-ticking supervision)에서 금융회사가 원칙에 입각하여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treating customers fairly: TCF)하였는지 따져보는 판단기반 감독체계(Judgement-based supervision)로 전환하였다. 이성복·이승진, “영국의 금융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체계 변화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5.3, 89면.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 정보 이동권의 일차적 대상으로 떠올랐다.²⁷⁾

이미 금융회사들은 직접 또는 외주회사를 통해 수집한 금융소비자 정보를 관련회사, 심지어는 소비자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자동차 텔레메틱스(telematics) 정보, 소비지출의 행태를 알 수 있는 카드거래 정보는 금융회사나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은행·보험사 간의 데이터 교환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고 있다.²⁸⁾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를 권유할 수도 있고, 금융소비자들도 자신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습관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③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NS의 경우에는 등록정보, 일지 등 텍스트, 사진 등은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으나, 소셜그래프나 코멘트 같은 데이터 형식,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순수한 SNS간의 이전에 추가하여 Third Party App 등에 대한 등록정보의 API 제공요구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소셜 네트워크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 베이스로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 SNS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차이, 사업자들의 기술표준,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되 EU에서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7) 2015년부터 영국의 은행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Gocompare.com 사이트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지급계좌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골라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에 이용하고 있다. Philip Woolfenson and Daniella Terruso, "Data portability under EU GDPR: A financial services perspective",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143, Oct. 2016, pp.12-14.

<<http://www.steptoecyberblog.com/files/2016/10/Data-portability-article.pdf>>

28) *Ibid.*

29) 영국은 국민투표로 EU탈퇴(Brexit)를 결정하였지만 정보이동권을 포함한 GDPR의 혁신적인 제도는 국내입법을 통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Orla Lynskey, "The Great Data Protection Rebranding Exerci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blog, August 8, 2017.

④ IoT - 커넥티드카, 네트 가전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축적된 개인정보가 디바이스 간에 직접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다양한 디바이스에 분산 축적된 개인정보가 본인의 Personal Data Store (PDS)에 집약되어 API³⁰⁾ 등을 통해 다른 IoT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 서비스 간에 정보형식의 표준화, 대용량 데이터 이전의 물리적 가능성(통신대역 등), 리얼타임성 등이 문제가 된다.

⑤ 헬스케어

의료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민감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하에 장기간 축적되어온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특히 정보이동권의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의료정보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공적기관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의료보험공단)의 care.data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본인을 거쳐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의료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이동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본인에 집중되어 예방의료 등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의 DB 간에 직접 데이터 이전을 하는 것이다. 의료정보는 환자 또는 그가 동의한 배우자·직계가족이 요청하여 병원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의료법 제21조). 이것을 디지털 파일로 이전받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 직접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료법의 소관 사항이다.

의료정보의 이동권이 원격진료(telemedicine) 서비스에도 이용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에 의한 진료’ 원칙에 따라 원격진료 서비스가 10년째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실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질병 데이터를

30)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OS)나 DB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갖는다. API는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을 위해 특정 서브루틴에 연결을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구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인 동의하에 이전 받아 건강진단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한 진료 목적의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원격진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⑥ 구매이력 - 전자상거래 사이트, 신용카드, POS 등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신용카드, POS(point-of-sales)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구매·결제 정보는 타게팅 광고 뿐만 아니라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프로파일링이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금융상품 제공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금융영업행위를 감독하는 FCA가 중심이 되어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 사업자가 전자적 형식으로 입수한 구매 데이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이 공표하는 보험, 대출, 에너지, 통신회사의 각종 데이터를 조회하여 최적 상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Gocompare.com³¹⁾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영국의 에너지회사인 Energylinx, 세계적인 개인신용평가회사인 Experian 등과 제휴하여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FCA의 감독하에 영업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IV. 우리나라에의 도입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모바일 전화번호 이동제, 자동이체계좌 이동제가 큰 무리 없이 시행되었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제도적 뒷받침이 따를 경우 클라우드 전자우편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제3의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는 식으로 행하여질 것이 예상된다.

31) Gocompare.com<www.gocompare.com>는 영국의 금융상품·서비스 가격비교 사이트이다. 2006년 웨일즈의 뉴포트에서 설립되어 주로 보험상품 위주로 가격비교를 하다가 점차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전기·가스요금, 통신요금, 대출이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교하는 사이트로 확대되었다. 2014년 말 보험회사인 esure에 인수되었으며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limited company)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자동이체계좌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www.payinfo.or.kr>을 통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금융거래 계좌이동제(account switching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³²⁾ 우리나라에서 계좌이동 서비스가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편의제공과 고객확보를 위한 실적경쟁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명실 공히 금융거래 계좌이동(financial account portability)을 하는 등 은행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은행 서비스가 더욱 개선되는 경쟁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³³⁾ 다만,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정보법에 반영할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신용정보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³⁴⁾

우리나라에서 정보이동권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외국계 IT기업의 정보유통 플랫폼 지배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4차산업 혁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제, 금융거래 계좌이동제와 같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인 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정보이동의 범위를 넘어 전자상거래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도 적잖은 이점을 가져다 줄 정보이동권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 근거규정을 마련³⁵⁾해 놓고 업계의 준비

32) 고객이 은행·증권회사의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증권회사로 이전하면 이와 연결된 각종 자동이체 계좌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새 계좌로 이전하게 된다.

33) 홍정아, 앞의 보고서, 4면.

34) 우리나라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이 없는 일본에서는 個人情報保護法の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범정부적 産業競争力懇談會(COCN)에서는 「IoT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이노베이션의 兩立」(2015)이라는 보고서에서 다음 세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 生貝直人, “EUの状況: 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ーの權利を中心に”, 2016.11.11. 13面.

① EU GDPR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전반의 이동성을 인정하되 예외가 되는 요건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역외적용을 강화하도록 한다.

② 영국의 midata(에너지, 모바일, 금융, 소매 등 소비자요구가 많은 정보), 미국의 Green Button(시간대별 전력요금, 사용량, 전력발생원 등 스마트그리드 정보)과 같이 대체기능성이 적은 중요 정보를 보유하는 특정 분야에 한해 적용한다.

③ 보조금·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35) 정보이동권이 여러 모로 이점이 많다면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상황을 보아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위치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의 제3절(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다음에 이른바 ARCO 권리와 나란히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3 (정보이동의 요구)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제공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처리·보관하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음에 정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해 없이 이를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없다.
 - 1. 공익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전송되도록 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③ 제1항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이동권이 보안(security)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이전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 표준 계약조건³⁶⁾ 및 그 적용범위, 절차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것이 옳지 않으나 논의가 있다. EU에서도 정보이동 대상은 전자적으로 자동화된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정보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이용은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시된다.

36) 계약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동대상 정보의 정의와 범위, 정보이전(데이터 반환)의 양식(format)과 기술적 표준에 관한 사항, 요금수준, 해약 후의 정보보관기간, 이용자의 요구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다름이 있는 기간 중에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세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업계에서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³⁷⁾을 때맞춰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³⁸⁾

이와 관련하여 정보이동권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³⁹⁾

- 정보이동권의 적용대상 및 범위, 한계
- 금융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그에 포함된 지재권 보호, 예금비밀 보호, 설명의무 등과의 충돌 가능성 유무
- 이전대상 정보의 완결성: 일부 요약정보도 허용되는지, 정보주체가 이를 수정·편집할 수 있는지
- 정보이전 요청에 따른 수수료: 부당하거나 반복적인 정보이전 요구에 대하여 부가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제3자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의 정보이동권 보장의 한계
- 정보이동권이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와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data processor)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정보 보관(retention) 기간과 관련하여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연수(年數)
- 금융 서비스 이외의 보험, 고용 등 어느 범위까지 표준화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정보삭제 불가 등. 佐佐木勉, 앞의 보고서, 58面.

37) 정보이동권에 관한 행동강령으로는 네덜란드의 웹호스팅협회 Dutch Hosting Provider Association <<https://www.dhpa.nl>> 사례가 있다. 이용자의 이익보호보다는 시장에서 DHPA 회원사를 특별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38) EU에서도 프랑스의 CNIL 등 주요국 감독기구가 국내적으로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밟는 등 29WP 차원에서 정보이동권 가이드라인에 이어 2017년 말에 상세한 시행세칙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9) See Woolfenson and Terruso, *supra* PLBI Report article.

참고문헌

- 노규성,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이성복·이승진, “영국의 금융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체계 변화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5.3.
- 홍정아, “우리나라 계좌이동 서비스 현황 및 영국사례의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3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3.15.
- 佐佐木勉, “欧州における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ーの在り方を巡る議論の動向”, 總務省AIネットワーク化検討會議 提出資料, 2016.4.
- 生貝直人, “自律・分散・協調社会とデータポータビリティーの權利”, 經濟産業省分散戦略ワーキンググループ 第6回, 2016.7.27.
- _____, “EU의 狀況: 데이터포ータビリティー의 權利を中心に”, 2016.11.11.
- Inge Graef, Jeroen Verschakelen & Peggy Valcke, “Putt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to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January 2013.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81092445>>
- Orla Lynskey, "The Great Data Protection Rebranding Exerci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blog, August 8, 2017.
- Robert Madge, “GDPR: data portability is a false promise”, Medium.com, July 4, 2017.
<<https://medium.com/mydata/gdpr-data-portability-is-a-false-promise-af460d35a629>>
- Blair Stewart, “Transplanting a privacy right to data portability into law”,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140, Apr. 2016.
- Philip Woolfenson and Daniella Terruso, “Data portability under EU GDPR: A financial services perspective”,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No.143, Oct. 2016.
<<http://www.g20.org/English/Documents/PastPresidency/201512/P020151228341855289327.pdf>>
- EU Commission,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p242rev.01 pdf.
<http://ec.europa.eu/newsroom/just/item-detail.cfm?item_id=50083>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reform/files/regulation_oj_en.pdf>
- NAVER 지식백과
- Gocompare.com <<http://www.gocompare.com/>>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이상 웹사이트는 2017.8.7. 최종접속)

Abstract

Is Data Portability Available in Korea?

Park, Whon-II*

In Korea, users have got familiar with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since 2004 and the bank account switching since 2015. They are also curious about the data portability stated i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enters into force on May 25, 2018.

Article 20 of GDPR creates a new right to data portability. It allows for data subjects to receive the personal data that they have provided to a controller, in a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 and to transmit those data to another data controller if technically feasible. In this context, data controller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interoperable formats that enable data portability. That right should apply where the data subject provided the personal data on the basis of his/her consent or th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new right is to empower the data subject and give him/her more control over the personal data concerning him/her. Since it allows the direct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from one data controller to anothe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also an important tool that will support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in the EU and foster competition between controllers. It will facilitate switching between different service providers, and will therefore foster the development of new services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In consequenc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similar and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of access, rectification, cancellation and objection (ARCO). Since the draft GDPR was disclosed in the early 2012, there have been pros and cons in relation to the new right. If it does not prove to be burdensome technically and fiscally to controllers, and the cost sharing could be settled in a reasonable way,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ill

*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be conducive to consumers. So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data portability have advised data controllers to start developing the means that will contribute to answer data portability requests, and recommend industry stakeholders and trade associations to work together on a common set of interoperable standards and formats through codes of conduct.

In Europe, Digital Giants such as Google, Facebook, Apple and Amazon (collectively called “GFAA”) have aroused concern that they dominate business platforms to make their own data distribution market. Against these backdrops, it is believed that EU has armed itself with a weapon of data portability to recapture the European data markets.

In Korea, however, does it make sense to adop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stated in the forthcoming GDPR? Which factor matters: market dominance, regul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competition between ISPs? In view of the strategic advantage of data portability, it is advisable to institut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 area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Cloud e-mail correspondence and the IoT-based connected cars or home networked appliances. Further, it will be extended to the vast market of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s.

At last,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ill make it necessary to establish a statutory groun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or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o coordinate the timing of such amendment to the existing Acts in line with the preparedness of the relevant industries.

Key Words : right to data portability, data subject, data controller, data collection/distribution platform, cloud e-mail, Internet of Things (IoT),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